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6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72993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
	2. B
피고, 피항소인	○○○시장
제 1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1구합15859 판결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 원고들에게 한 지방세 134,031,0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6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 제1심판결이 설정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4쪽 17행 "…다르다)." 뒤에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원고 B이 D, M(그 장모인 N 명의)과 함께 의정부시 O건물 관련 사업을 진행하다가, D이 자신의 투자금 회수를 원하여 협의 끝에 원고 B이 D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D에게 자금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D의 주식 양도는 무효가 되었다는 등의 취지로도 주장한다. 주장의 취지가 반드시 명확하지 않으나, 이는 원고 B이 D에 대한 (투자금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니 그 채무 발생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이 사건 계약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도 무효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 계약이 일단 체결된 이상, 이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 있었다고 해서 그 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제1심판결 6쪽 8행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뒤에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C의 재산이 P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정은, 원고들이 C의 과점주주인지 여부 내지는 이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에 영향을 끼칠 사정이 될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처럼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은, 어느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하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6

만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부동산)에 관해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추가되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와 관련해서 신탁재산을 위탁자의 재산에 포함시키는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및 P 주식회사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 즉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은 위 신설 규정이 시행된 2016. 1. 1. 이후이므로, 위 신설 규정이 적용된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